

보도	2026.6.17.(수) 조간	배포	2026.6.16.(화)	
담당부서	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	책임자	국 장	김은순 (02-3145-7750)
		담당자	팀 장	이혜진 (02-3145-7970)
			조사역	김도원 (02-3145-7974)

'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

- 주 요 내 용 -

◆ (재무제표 감사의견) '25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'적정' 비율은 97.6%(2,637사)로 전기와 유사(97.5%, 2,615사)한 수준입니다.

- ✓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적정'인 기업 중 감사인이 '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'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2.5%(66사)입니다.
- ✓ '비적정'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자금거래, 기초 재무제표 잔액, 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 제한입니다.

◆ (내부회계 감사의견) '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'적정' 비율은 98.6%(1,629사)로 전기(98.0%, 1,582사)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.

- ✓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(+38사) 하였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(△9사)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✓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시 '의견거절', 자산평가 등의 통제 관련 중요한 취약점 존재시 '부적정의견'이 표명됩니다.

[유의사항 안내]

- ☑ (정보이용자)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, 회사에 대한 중요 정보인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,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☑ (회사 및 외부감사인)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보고 기준의 규정화, 회계기준 제개정(K-IFRS 제118호(27년 시행예정) 등),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변경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

I 재무제표 감사의견 분석

- ◆ '25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(2,702사)의 97.6%(2,637사)로 전기(97.5%, 2,615사)와 유사한 수준
- ◆ '비적정' 의견*은 2.4%(65사)로 계속기업 불확실성, 기초 재무제표 잔액, 자금 거래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 제한이 주된 사유
 - * 의견거절, 부적정의견, 한정의견 등 감사의견이 변형된 경우(☞붙임)

□ (적정의견) 분석 대상 (2,702사^{*1})의 97.6% (2,637사)가 '적정'으로 '19년 新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% 수준을 유지^{*2}

*1 '25년 중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
 *2 적정의견 비중(%): ('21) 97.2 → ('22) 97.9 → ('23) 97.5 → ('24) 97.5 → ('25) 97.6

- (시장별)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(98.5%), 코스닥(97.6%), 코넥스(89.9%) 順
- (규모별) 소규모 기업일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(1,009사, 전체 37.3%)의 적정의견 비율은 95.2%로 가장 낮음

'25년 재무제표 적정 감사의견 현황								(단위 : 사, %)
구 분	시장별			규모별('25년말 자산 기준)				합 계
	유가증권	코스닥	코넥스	1천억원 미만	1천억원 ~ 5천억원	5천억원 ~ 2조원	2조원 이상	
전 체	808	1,785	109	1,009	1,085	399	209	2,702
적정의견	796	1,743	98	961	1,071	396	209	2,637
(비 중)	(98.5)	(97.6)	(89.9)	(95.2)	(98.7)	(99.3)	(100)	(97.6)

□ (계속기업 불확실성) 적정의견 기업 중 감사인이 '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*'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66사(2.5%)로 전기(84사) 대비 18사 감소

* 계속기업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나 '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 강조사항 기재

- 한편, 전기('24년)에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(84사)의 32.1%(27사)가 당기('25년)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바, 정보이용자 주의 필요 (미기재기업 1.4% 대비 높은 수준)

- **(비적정 의견)**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'비적정'인 상장법인은 65사(2.4%)로 전기(66사, 2.5%) 대비 소폭(△1사, 0.1%p) 감소
- **(의견별)** '의견거절'은 61사로 전기(58사) 대비 3사 증가, '한정의견'은 4사로 전기(8사) 대비 4사 감소
- **(시장별)** 유가증권시장 12사(1.5%, 전기 대비 △4사), 코스닥시장 42사(2.4%, 전기 대비 +1사), 코넥스시장 11사(10.1%, 전기 대비 +2사)로 전기와 유사

'25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현황

(단위 : 사, %)

구 분	'25년(A)				'24년(B)				증 감 (A-B)
		유가증권	코스닥	코넥스		유가증권	코스닥	코넥스	
전 체	2,702	808	1,785	109	2,681	816	1,745	120	+21
의견거절	61	11	40	10	58	13	36	9	+3
한 정	4	1	2	1	8	3	5	-	△4
비적정의견 계	65	12	42	11	66	16	41	9	△1
(비 중)	(2.4)	(1.5)	(2.4)	(10.1)	(2.5)	(2.0)	(2.3)	(7.5)	-

- **(사유별)**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된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·부채·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미확보이며,
 - 그 외 대여금 등 자금거래, 기초재무제표 잔액*, 자산평가, 내부통제 등과 관련하여 비적정의견이 표명됨

* '24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'24년 기말 잔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'25년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제한된 경우 등

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

- ◆ '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(이하 '내부회계') 감사의견이 '적정'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(1,653사)의 98.6%(1,629사)로 전기(98.0%)보다 다소 개선
- ◆ 내부회계 '비적정' 상장법인은 1.4%(24사)이며, 감독 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지속 등으로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전기(33사) 대비 9사 감소

□ (적정의견) 상장법인(2,702사) 중 내부회계 감사대상은 1,653사*(61.2%)로, 이 중 98.6%(1,629사)가 감사의견 '적정'으로 전기(98.0%) 대비 다소 개선(+0.6%p)

*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(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)

○ (시장별) 유가증권시장 808사 중 내부회계 감사대상은 92.6%(748사)로, 이 중 적정의견은 98.3%(735사)

- 코스닥 1,785사 중 50.3%(898사)가 감사대상이고 적정의견은 98.8%(887사)

- 코넥스의 경우 109사 중 6.4%(7사)만 감사대상으로 모두 적정의견

○ (규모별) 자산 2조원 이상은 모두 적정의견이나,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98.7%, 5천억원 미만은 98.2%로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

○ (연결기준)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*인 198사(유가증권 191사, 코스닥 7사)는 별도·연결 모두 적정의견

* '23년부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종속회사를 보유한 기업 대상, '29년 5천억원 이상, '30년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

'25년 내부회계 감사의견 적정 상장법인 현황

(단위 : 사, %)

구 분	시장별			규모별(25년말 자산기준)			합 계
	유가증권	코스닥	코넥스	5천억원 미만	5천억원 ~ 2조원	2조원 이상	
상장법인	808	1,785	109	2,094	399	209	2,702
내부회계 감사대상	748	898	7	1,046	399	208*	1,653
	(92.6)	(50.3)	(6.4)	(50.0)	(100)	(99.1)	(61.2)
적정의견	735	887	7	1,027	394	208	1,629
(비 중)	(98.3)	(98.8)	(100)	(98.2)	(98.7)	(100)	(98.6)

* '25.11월 신규 설립 1개사 제외

- **(비적정의견)** 감사대상 증가('24년 1,615사 → '25년 1,653사, +38사)에도 불구하고, 감독강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 의견 기업은 전기 대비 9사 감소(33사→24사)
 - **(의견별)** '의견 거절(감사범위제한)'은 11사로 전기(22사) 대비 11사 감소, '부적정(중요한 취약점 有)'은 13사로 전기(11사) 대비 2사 증가
 - **(사유별)** 비적정의견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(사업계획 수립·검토 프로세스), 손상평가, 전사수준 통제, 결산 프로세스, 자금통제 등과 관련됨

'25년 내부회계 비적정 감사 의견 현황						(단위 : 사)
구 분	'25년(A)	유가증권	코스닥	코넥스	'24년(B)	증 감 회사수 (A-B)
의견거절	11	7	7	-	22	△11
부 적 정	13	6	4	-	11	+2
합 계	24	13	11	-	33	△9

IV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교

◆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8사이며, 향후 중요한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될 우려

-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24사 중 16사(66.7%)는 재무제표 감사 의견도 비적정으로, 양 의견 간 상관관계가 높은 수준
 - 재무제표는 적정의견*이지만,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8사 존재
 - *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이라도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오류사항이 적절히 수정·반영되었다면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 가능
- 동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, 향후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이 반복되거나 재무제표가 왜곡표시 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'25년 내부회계 비적정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의견					(단위 : 사)
내부회계 감사의견		재무제표 감사의견			적정
		비적정	의견거절	한정	
내부회계 의견거절	11	11	11	-	-
내부회계 부적정	13	5	5	-	8
합 계	24	16	16	-	8

Ⅲ 유의사항 안내

1 정보이용자 유의사항

① **적정의견**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라도 **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**을 면밀하게 **확인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외부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'적정' 의견을 표명하나,
 - '계속기업 불확실성' 등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'강조사항'에 별도 기재하므로,
 - 감사의견이 '적정'인 경우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의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 후속기간에 **상장폐지** 또는 **비적정의견**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*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'24년에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'적정'이었으나 '계속기업 불확실성'이 기재된 상장사(84사)의 32.1%(27사)가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음

[참고]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·신설 내용 ('26.7월 시행 기준)

구분	코스피	코스닥
시가총액기준 조기화	['26.7월] 200 → 300억원	['26.7월] 150 → 200억원
	['27.1월] 300 → 500억원	['27.1월] 200 → 300억원
동전주 요건 신설	신설	좌동
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	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*	좌동
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	누적벌점 15점 → 10점, 중대·고의 위반 추가	좌동

* '26.7.1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

※ '26.4.17 (보도자료)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.

② **재무제표**에 대한 감사의견이 **적정**이라도 **내부회계관리제도**에 대한 감사의견은 **비적정**일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의 **대응**에 유의해야 합니다.

-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*에 대해 각각 감사의견이 표명되므로,
 - * 내부회계 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**1천억원** 이상 상장법인(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 등 제외)
 - 내부회계관리제도에 **중요한 취약점**이 존재하여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, 회사가 추후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① '27년부터 시행되는 '재무제표 표시와 공시' 기준서(K-IFRS 제1118호)*에 대비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K-IFRS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를 전면 대체하는 기준서

- 新기준서 적용시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범주화, 영업손익 개념의 변경, 경영진 성과측정치 공시 추가 등 중요한 회계변경이 수반되므로,
- 회사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회계정보 산출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
[참고] K-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

- ① (손익계산서 범주화) 수익과 비용을 영업, 투자, 재무, 법인세,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, 범주별 중간합계(Subtotal)의 표시를 의무화
- ② (영업손익 개념 변경)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→ 투자,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
 - K-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식으로 공시하고, K-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함
- ③ (경영진 성과측정치(MPM)* 공시)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非회계기준(Non-GAAP) 성과 지표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
 - * Management-defined Performance Measures

※ '25.12.18. (보도자료) '27년부터 K-IFRS 손익계산서가 변경되고,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됩니다.
'26.4.13. (보도자료) K-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

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시 관련 규정*을 준수해야 하며, 운영실태 보고서에 '자금 부정 통제'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.

*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2 [별표6]

- '25년부터 외부감사규정상 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」을 준거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(기존 상장협 자율규정에서 외부감사규정으로 법제화),
-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·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공시*해야 합니다.

* 일부 비금융회사(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, 대형 비상장사)는 1년간 유예되어 '26년부터 의무 적용

※ '24.11.11. (보도자료) 「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·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」을 충실·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

③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므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'26.5월 주가조작·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와 관련하여 관심도가 제고되고 있으므로,
 - 회사 지배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·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,
 -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.

[참고]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주요 변경 사항

- ①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상한(10억원)을 폐지하고, 신고의 내용, 해당 신고를 통해 징수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
 - ②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
 - ③ 회계기간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(매년 20~30%)
- ※ '26.5.20. (보도자료) 자본시장법·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 주가조작·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

IV 향후 계획

-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변화하는 제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,
 -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

□ **(재무제표 감사의견)** 감사범위 제한 여부,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, 계속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**적정 · 한정 · 부적정 · 의견거절**로 구분

구 분	적정의견	한정의견	부적정의견	의견거절
□ 감사범위 제한				
· 경미	○			
· 중요		○ ²⁾		
· 특히 중요				○ ³⁾
□ 회계처리기준의 위배				
· 경미	○			
· 중요		○ ²⁾		
· 특히 중요			○ ³⁾	
□ 계속기업 가정				
·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				
- 적절하게 공시	○ ¹⁾			
- 부적절하게 공시		○ ²⁾	○ ³⁾	
· 타당하지 않음			○ ⁴⁾	

- 1)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 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(감사기준서 570 문단 22)
- 2)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(감사기준서 705 문단 7,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)
- 3)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(감사기준서 705 문단 8~9,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)
- 4)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(감사기준서 570 문단 21)

□ **(내부회계 감사의견)**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, 감사범위 제한 여부 등에 따라 **적정, 부적정, 의견거절** 세 가지로 구분

※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,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

- **(적정)**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**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**
- **(부적정)**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**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음**
- **(의견거절)** **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**